

위자료(서울민사지법 1991.9.19. 선고 91가단24555 판결 : 항소)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1년도 3권 203페이지

【판시사항】

수사기관의 변호인접견신청거부와 국가의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의자의 신병이 있는 경찰서의 순경 등이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공무원인 위 순경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접견금지처분으로 위 변호인이 그 직무수행을 방해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형사소송법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8.자, 91도24 결정(집39①739 공1991,1324)

【당사자】

원고 김한주

피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4.30.부터 1991.9.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1991.4.10. 소외 김미현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같은 달 9. 구속 수감된 동인의 남편 소외 박형기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1991.4.11. 16:20경 공동변호인인 소외 최동배 변호사와 함께 위 박형기의 구속집행장 소인 용산경찰서에 당도하여 위 경찰서 수사계장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위 박형기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동인은 위 박형기가 치안본부 대공2부에서 구속한 피의자이므로 위 대공2부의 허가없이 접견을 허용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신병도 현재 조사를 위하여 치안본부 대공2부에 있다고 하여 원고와 소외 최동배는 같은 날 16:4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2부에 찾아가 정문 경비 의경인 소외 이광진, 김홍겸 등에게 위 박형기의 변호인임을 밝히고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다.

다. 소외 김홍겸은 원고와 소외 최동배에게 명함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을 확인한 후 소외 이광진이 정문 인터폰을 통하여 위 대공2부에서 근무하는 순경 소외 박정수에게 원고 등의 접견신청 사실을 전달하였으나 위 박정수는 오늘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 등이 재차 무슨 이유로 접견을 허용할 수 없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박정수는 위 정문경비 의경을 통하여 담당자가 없어서 오늘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원고 등은 소외 박형기의 접견을 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7:20경 그대로 돌아갔다.

마. 원고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치안본부 대공2부장을 상대로 하여 위 접견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하고 1991.4.16. 위 법원에서 치안본부 대공2부장이 1991.4.1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소외 박형기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여 그 시점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호증(변호인선임신고서),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 사본), 갑 제3호증(확인서), 갑 제4호증(결정문), 갑 제6호증(인증서), 을 제3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동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원고가 공무원인 박정수 등의 위법한 변호인접견거부처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원고의 접견신청 당시 신문 담당관인 소외 한균열등 담당자가 대공2부장에게 수사상황보고를 하고 있어서 위 박정수가 원고 등에게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통보하였는데 원고 등이 그대로 돌아갔을 뿐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외 박정수가 원고 등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자리에 없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통보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2,7호증(각 자술서), 을 제6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수, 한균열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서 인정한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접견권의 인정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박

형기의 변호인으로서 동인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소의 박정수 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원고의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무원인 위 박정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원고의 손해

피고의 위 접견금지처분으로 원고가 그 직무수행을 방해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변호인접견권의 중요성, 이 사건 접견금지처분의 경위 및 결과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4.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9.1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위 인정 금원 중 2분의 1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철

번호 : 10/18

입력일 : 97/09/08 11:13:47

자료량 : 140줄

국가보안법위반 (서울고법 1991.11.14. 선고 87노138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1년도 3권 415페이지

【판시사항】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
2. 국회의원의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공소와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1. 헌법 제45조(구 헌법 제81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일체 불가분적으로 행하여진 부수행위까지 포함되고 위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이 공개리에 개최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 앞서 위 회의시작 30분 전에 국회의사당 소재 국회출입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만 취재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비서를 통하여 발언원고사본을 배포하였다면, 그가 배포한 원고의 내용의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점(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및 원고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1.2.3. 헌법 제45조
3. 형사소송법 제327조

【당사자】

피고인 유성환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제1심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1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2.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신한민주당의 공천으로 대구 중·서구지역에서 입후보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86.7.경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으로 내정되자 통일정책문제, 학원문제, 인천사태 등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1986.10.8. 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방배2동 537의 23 소재 천우가든 나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정부질문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첫째,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에 관련하여

-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
-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등으로 통일을 위하여서라면 공산화통일도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둘째, 이른바 삼민이념에 대하여

- 학생운동의 본질은 반의세민족자주와 반독재민주화 및 민중생존권투쟁으로 집약된다.
- 이것을 줄여서 삼민이념이라고 하는데 수사당국은 삼민이념을 용공좌경이라고 몰아부쳐 용공조작에 협안이 되어 있다는 등으로 용공이적이념임이 명백한 삼민이념을 정당한 민주화투쟁인 양 미화하여 삼민이념에 관한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고,

셋째, 인천소요사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 인천사태는 독점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투쟁이며,
- 한반도 분단과 강대국의 현상고착정책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 자주적 통일투쟁이었다는 등으로 우리의 현체제를 민중수탈체제로 왜곡하고, 미국이 두 개의 한국조작체동으로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북괴의 대남모략 비방선전에 부합하는 내용 등을 기재, 원고를 완성하고, 그 무렵 비서인 공소의 양순석으로 하여금 50부를 복사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위 양순석을 통하여 위 원고 복사본 30부를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름게 한 것이다 고 함에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 사전배포행위는 발언을 위한 사전준비행위 내지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헌법 제45조(구 헌법 제81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헌법 제45조(구 헌법 제81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일체 불가분적으로 행하여진 행위(부수행위)까지 포함되고, 위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양순석, 이건영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회출입기자들에게만 취재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비서인 공소의 양순석을 통하여 위 회의시작 30분 전인 같은 날 13:30경 국회의사당 1층 소재 국회출입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만 취재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발언원고사본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이 배포한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한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시각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의 근접성), 원고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직무부수행위의 대상)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점(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및 원고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목적의 정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체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어,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광중
판사 장해창
판사 고영한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

(서울고법 1992.3.25. 선고 90구21256 제5부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2년도 1권 569페이지

【판시사항】

광주사태 직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사표를 강요당한 끝에 가족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직된 후 조건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과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10여 년이 지나 제기한 무효확인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 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2조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역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당사자】

원고 신형조

피고 법무부장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7.9.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피고가 1980.7.9.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중인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형식으로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은영, 한형순의 각 증인,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주사태 직후인 1980.6.12.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후 광주사태 관련자 수사와 관련하여 전남지구 계엄사령부와 광주지구 제505보안대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의율하여 엄문수사하도록 지시하여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1980.7.3. 대검찰청으로부터 사표제출을 요구받고 그 다음날에는 서울지구 제506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다시

사표제출을 강요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처인 소의 조은영은 원고가 강제연행된 후 검찰총장 등을 찾아가 원고의 행방을 묻고 구명운동을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당시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남편의 신상에 미칠 위해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달 5. 임의로 차남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9.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하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원고를 면직한 것이어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일용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명의의 사직서가 제출된 즉시 석방되어 그 처로부터 사직서의 작성경위를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후인 1980.7.7.에는 소속청인 광주지방검찰청에 가서 사직원의 제출사실을 동료검사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임인사까지 마쳤고, 이 사건 처분 후인 같은 달 25.에는 퇴직연금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매월 연금을 받아오고 있으며, 1989.5.12.에는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퇴직연금과 보상금 등을 수령함에 있어 어떠한 조건을 유보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퇴직연금 등을 수령한 시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후 무려 10여 년이 지난 1991.12.7.에야 비로소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275 판결 참조).

원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위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전에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지홍원

판사 김선중

판사 이길수

손해배상(기)청구사건(부산지법 1992.6.24. 선고 91가단58693 판결 : 확정)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2년도 2권 168페이지

【판시사항】

국가안전기획부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의 처로부터 변호인 선임을 의뢰 받은 변호사의 접견을 담당공무원이 변호인선임서가 없으면 접견할 수 없다면서 거부한 경우 변호사가 접견권 행사를 방해받음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국가와 공무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민법 제750조

【당사자】

원고 정재성

피고 대한민국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6.25.부터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에 이른 흠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과 같은 날인 1991.12.16.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위 배상신청은 1992.4.10.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4, 5, 7, 8, 10,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1, 2, 6, 9,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월봉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서, 1991.3.7.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된 소외 김태관의 처인 소외 이경이로부터 위 김태관을 위한 변호인 수임을 의뢰받았다.

2. 원고는 그 변호인 수임을 하기 전에 위 김태관을 접견하고자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 정문에서 위 김태관에 대하여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접견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 배병일은 변호인 선임서가 없으면 접견할 수 없다면서 접견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형사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듭 접견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배병일은 그것은 않면서도 막무가내로 변호인선임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위 김태관의 접견을 거부하여, 공무원인 피고 배병일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가 위 김태관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의 접견권을 방해하였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배병일이 이 사건 당시 원고에게 변호사신분증 및 변호인선임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피고 배병일은 원고가 변호사인지 또는 위 김태관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인지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그 접견불허행위는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 배병일은 원고에게 변호인선임서의 제시를 요구하였을 뿐, 변호사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에 구속되었던 소외 최원창에 대한 접견을 먼저 신청하면서 그에 대한 변호인선임서를 제시하였으며, 피고 배병일이 위 최원창은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므로 접견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실, 원고가 위 김태관의 처인 이경이로부터 변호인 수임을 위하여 받아 가지고 있던 위 이경이의 주민등록등본, 그녀의 도장 등을 피고에게 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 배병일은 원고가 위 김태관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라는 점에 대한 의문으로 접견을 거부하였다기보다 단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통제해 온 관행에 따라 그 접견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특별히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김태관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로서(실제 나중에 위 김태관의 변호인이 되었다.) 위 김태관을 접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인 피고 배병일의 불법행위로 접견권행사를 방해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배병일은 물론이고, 국가는 그 소속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후의 결과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인 1992.6.25.부터 깊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광룡

번호 : 5/9

입력일 : 97/09/08 11:13:47

자료량 : 277줄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서울형사지법 1992.8.5. 선고 92노633 제5부판결 : 확정)

【총 전】

하급심판결집 1992년도 2권 449페이지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적용범위
2. 위 법조항위반으로 기소된 이른바 3당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 행위가 이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전) 제7조(찬양·고무 등)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름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⑦ 생략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0.4.2.자, 89헌가113 결정

【당사자】

피고인 최은용

항소인 피고인

【제1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2.1.6. 선고, 91고단5625, 91고단771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

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입수된 증 제5, 6호(선언 창간호 및 제2호, 서울지방검찰청 1991암제3688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반국가단체활동동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이하 사노맹이라고 한다)이 반국가단체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한 말은 당시의 정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국가보안법의 범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첫째 1991.4.3.의 집회에는 피고인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옆에서 구경만 한 것이고, 둘째 1991.4.17.의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동 집회는 폭력을 상정하지 않은 평화적인 집회였었는데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학생들도 폭력으로 대항하게 된 것이며 처음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각 유죄로 인정한 데는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다. 이적표현물소지의 점에 관하여

첫째 남북합의서가 채택되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현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될 수 없고, 둘째 책의 소지는 사상의 문제로서 사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셋째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선언'의 내용은 북한의 주장과 질적으로 틀려 이를 소지한 것으로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넷째 피고인은 사회과학적 인식을 넓히려고 위 각 책자를 구입하였던 것이고 이를 소지함으로 인하여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책자의 소지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데에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각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1991.4.17.자 집회도 그 집회의 성격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나. 이적표현물소지의 점에 관하여

첫째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북한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둘째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도 그것이 순수한 내심의 상태에서 벗어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셋째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책자인 '선언' 창간호와 제2호의 내용에는 남한에서의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전술론, 민중연대투쟁을 촉발하기 위한

선도적 정치부대로서 반파쇼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바,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은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넷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에 있어 목적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죽한 것이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파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학문적인 호기심만으로 위 책자들을 소지하였다고 볼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반국가단체활동종조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줄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리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 행위가 이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는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노맹 발행의 '1.22. 파시즘적 보수대연합에 대한 사노맹의 긴급전술결의'라는 유인물을 읽고 양봉만과 함께 토론하면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민중 앞에서 드러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항상적으로 이들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수대연합을 계기로 민주, 공화당의 색깔이 어찌한가를 폭로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바, 우선 피고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은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이라든가 '민주, 공화당의 색깔'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들에 대해 어떻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 유인물의 내용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위 유인물의 경우에는 3당통합을 반동 부르조아지를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진영의 반혁명연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반동 부르조아지의 공격적 조치에 대하여 일각에서 주장하는 평민당 등 자유민주주의 뿐만 부르조아지와의 민주연합론 및 진보정당 준비모임의 보수대야합 심판 국민투표쟁취론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파시즘적 보수대연합에 대한 전민중적투쟁전개, 평민당 등 자유민주주의 부르조아지 세력들의 정치적 무력화 및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대연합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전국민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3당 통합을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이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3당 통합에 대처하는 구체적이고도 전술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것인 반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3당 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것임

에 비추어 그 차원이 다르고 위 유인물의 핵심적인 주장내용에 궤를 같이하여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내용이 위에서 본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을 줄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사 노맹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범리 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69525호 및 79439호 수사기록)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6952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상황일지 사본(제801, 805장 이하)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증 제5, 6호(선언 창간호, 제2호, 서울지방검찰청 91암제3688호)의 각 혐존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각 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적표현물소지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자격정지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짚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6. 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 동조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1988.5.중순 교내이념씨클인 ‘문화부’에 가입하여 같은 해 7.까지 사회과학 서적을 교재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1989.1.부터 9.까지 사이에 선배인 김광현, 김연수 등의 지도하에 철학의 기초이론, 변증법적 유물론, 러시아혁명사 등을 교재로 의식화 학습을 하고 대학 입학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세계철학사 등 약 200여 권의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해 음으로써, 남한 사회는 미·일의 제국주의 세력에 종속되어 있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서 민중이 착취, 수탈당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주의로의 변

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를 위하여 모든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을 건설한 후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이 참여하는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던 중, 1990.2.경부터 동국대 민주주의 학생연맹(약칭 ‘동민학련’) 중앙위원 한종서로부터 ‘동민학련’ 관련 문건을 교부받아 이를 탐독하는 한편, 세미나와 학습을 통하여 ‘동민학련’의 투쟁목표, 전술목표, 조직보위 수칙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같은 해 1.경부터 평소 운동권 학생으로 알고 지내던 공소의 양봉만(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인쇄부원)과 접촉하면서 동인으로부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의 투쟁목표, 전략 전술, 조직의 보위 수칙 등에 대하여 학습을 받은 후 동인에게 자필소개서를 작성 제출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사노맹 출범선언문 등을 탐독함으로써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은 그 목표가 남한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인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을 건설, 이를 중심으로 농민, 도시빈민 등 전민중과 연대하여 민중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무장봉기를 유발, 폭력으로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여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민중연합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 민족민주혁명을 달성한 다음 반동관료숙청, 토지 및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990.2.14.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옥호미상의 카페에서 위 양봉만으로부터 ‘사노맹’에서 발행한 ‘1.22. 파시즘적 보수대연합에 대한 사노맹의 긴급전술결의’라는 유인물 1부를 교부받아 이를 탐독함으로써 동 유인물은 3당 합당을 파시즘적 보수대연합으로 보고 반동 부르조아 계급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음모로 평가하면서 이를 깨뜨리고 계급투쟁에서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민중대연합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같은 해 2.19. 19:00경 신촌의 옥호미상 카페에서 위 양봉만과 만나 위 유인물의 내용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피고인이 -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민중 앞에서 드러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항상적으로 이들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자 위 양봉만은 - 보수야당은 실제의 민중투쟁에 고립, 무력화의 대상이므로 민중은 이들에 대해 정치적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 보수대연합을 계기로 민주, 공화당의 색깔이 어떠한가를 폭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的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단정할 아무런 입증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현

판사 고영석

판사 채동현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서울형사지법 1992.6.23. 선고 92고합595 제21부판결 : 항소기각)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2년도 2권 460페이지

【관시사항】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국제사회주의자들”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그 가입일자가 처벌규칙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⑦ 생략

【당사자】

피고인 조현정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요컨대, 피고인이 1991.6.8.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노동자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국제사회주의자들, 영문약자 : IS,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한 것은 1991.6.8.이 아니라 1990.12.말경으로 1991.5.31.자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언제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검찰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까지는 일관하여 1990.12.28.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의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1990.12.28. 공소의 최일봉의 권유로

동인 등과 함께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후 1991.6.8. 이전까지 수차에 걸쳐 토론을 하고 학습지도를 받았으나 그 단체를 단지 사회주의에 관하여 토론하는 모임으로 알았을 뿐 그 명칭, 성격 내지 주장내용, 입장 등에 관하여 전혀 몰랐었는데 1991.6.8. 이 사건 단체가 발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토대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단체가 표방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위 1991.6.8.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이정구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위 이정구가 1991.6. 초순경 서부팀을 교육시키는 자리에서 서부팀원인 피고인, 공소의 정숙영, 조승희에 대하여 이 사건 조직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던 것처럼 동 조직의 이념과 목적등을 설명하고 가명사용, 학습방법 등 조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056, 1057장)가 있으나, 피고인 및 이정구의 위 각 진술기재 부분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의 이정구, 정수경, 이성복, 박진희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 이정구, 조승희, 장선, 정수경 작성의 각 자술서 사본 및 추송서에 편철된 ‘정치적 명확성을 위하여’ ‘명확한 정치학2’ 사본의 각 기재(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등을 종합하면, 공소의 최일봉, 이성복, 이정구, 박진희, 설갑수 등 5명이 1990.10.15.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으로 남한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후 이를 국외로 확산시켜 국제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혁명인 노동자계급혁명을 지도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선전, 선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단체를 구성하여 1992.2.경까지 기관지 등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조직원들을 포섭하며 사상학습을 실시하는 등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1988.3.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에 입학하여 그때부터 1989.9.경까지 위 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서적을 교재로 의식화학습을 하는 단체인 ‘동진회’에 가입하여 주 1회씩 학습하고 그 후 1990.12.경까지 혼자 40권 상당의 사회주의 이념서적을 탐독하던 중, 1990.12.28. 18: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교 앞 ‘마이웨이’ 카페에서 위 최일봉, 이성복 등으로부터 “소련사회는 생산이 인민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투쟁으로 권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는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임은 이러한 노동자권력을 지지하는 정치적 모임이다.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학습하면서 함께 활동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단체에의 가입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동인들과 함께 활동할 것을 동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1991.1.4.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7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금성극장 옆 ‘프랑스’ 카페 등지에서 이 사건 단체의 조직원인 공소의 정수경, 도안(가명) 등과 함께 “국가와 혁명” “레닌”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조변화와 신흥공업국”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이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책자 등을 교재로 하여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국가, 노동자들에 의한 혁명, 프롤레타리아독재, 국가의 자본화, 사회주의의 국제성,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 등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 학습하였고, 같은 해 4.5. 16:00경 위 ‘끌로렐’ 카페에서 위 정수경, 이정구, 공소의 이우영(가명) 등과 함께 “진정한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을 해방, 쟁취하여야 하고 낡은 국가를 전복하고 새롭고 완전한 민주국가를 창출하는, 즉 자기해방의 원리와 민주적 노동자 국가의 원리를 골자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것인바, 현재는 사회주의의 위기에 있다고 하나 최근 1930년대와 유사한 위기의 시대에 처해 있으므로 국제사회주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세상을 쟁취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단체의 기본사상을 문서화한 “아래로부터의 사회

주의”라는 문건의 복사본을 교재로 하여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자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의 힘으로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만 비로소 이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습, 토론한 다음 위 이후영으로부터 앞으로 이 사건 단체의 정식명칭을 ‘노동자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명의로 각종 선전문건을 제작하여 선전활동을 하게 되니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제까지 그러한 뜻으로 모임을 갖고 학습토론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에 동의하였으며, 같은 해 5.2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우산속’ 카페에서 위 정수경, 이정구, 공소의 동숙 등과 함께 위 유인물 중 주로 이 사건 단체의 목적 내지 강령 부분에 관하여 논의하고, 별지 공소사실(제15면 제12행 내지 제16면 제4행)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방식에 따라 활동할 것을 결의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단체는 그 조직원에 대하여 가입의 의사표시를 밝히고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이에 가입되는 것이고 특별한 가입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1991.8.경 이전에는 이 사건 단체의 조직원들만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고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토론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처음 위 최일봉으로부터 이 사건 단체에의 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1990.12.28.경 이미 이 사건 단체가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전, 선동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충분히 알고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1991.6.8.자 모임은 단지 피고인이 위 단체에 가입하여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수차례 걸쳐 이 사건 단체가 표방하고 있는 소위 ‘국제적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하는 등 조직원으로서 그 내부 활동을 하여 오다가 그 조직원들 중 일부와 함께 동 단체의 목적 내지 강령을 문서로써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정하는 등 그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결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91.6.8.을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한 일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한 위 1990.12.28.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태
판사 박정훈
판사 안영진

번호 : 5/18

입력일 : 97/09/08 11:13:47 자료량 : 96줄

손해배상(기)(서울민사지법 1992.10.15. 선고 92가단58883 판결 : 항소기각)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2년도 3권 230페이지

【판시사항】

긴급구속 후 사후구속영장이 아닌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긴급구속시 수사관들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항공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선박·항공기·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07조

【당사자】

원고 김종식
피고 대한민국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7.8.부터 1992.10.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7.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2호증의 5,10,14,15,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증인 손성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년도 전국대학교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제5기 의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자인바, 원고는 1991.7.8. 0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 4동 181의 381 소재 명진빌라 202호 소의 천재용의 집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전대협 간부 7명과 함께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 구금된 사실, 그 후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인 소의 김영배는 1991.7.9. 원고

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조영수의 청구로 같은 날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같은 해 7.10. 01:35경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같은 해 7.8. 원고를 체포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구금할 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1991.7.8. 원고를 영장없이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의한 긴급구속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사관들로서는 원고에 대하여는 사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으로써 원고는 실제로 긴급구속된 때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전까지 2일간 구속영장 없이 구속되었다고 할 것이고(갑 제3호증의 6,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1991.6.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체포될 때 위 영장이 제시되어 집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원고를 긴급구속할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긴급구속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경위, 원고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

번호 : 3/9 입력일 : 97/09/08 11:13:47 자료량 : 195줄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서울형사지법 1993.1.20. 선고 92노6354 제5부판결 : 상고)

【출전】

하급심판결집 1993년도 1권 412페이지

【판시사항】

- 작가 황수영이 쓴 ‘북한방문기’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 겸 제간 문학비평지의 편집위원이자 시인인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우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작가 황수영이 쓴 ‘북한방문기’ 제4, 5, 6장은 단순히 필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본 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정도를 넘어 필자의 주관적인 집필의도하에 남한민주사회를 비방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 이념 및 생활상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회지도력 및 주체사상을 편향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 1466)
1992.4.14. 선고, 90도3001 판결(공1992, 1641)

【당사자】

피고인 이시영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제1심 판결】

서울형사지법 1992.9.8. 선고, 90고단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시영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시영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이시영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이구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9호(창작과 비평 1989년 겨울호) 및 증 제11호(북한방문기 단행본 계약서 및 출금전표 4매)를 피고인 이시영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시영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소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창작과 비평 1989년 가을호에 게재한 이 사건 황수영(필명, 황석영)의 북한방문기는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제2점의 요지는, 가사 위 북한방문기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작과 비평이 대상으로 삼는 독자들의 수준과 피고인들이 이 방문기를 게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방문기의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적 목적도 없었다는 것이고, 제3점의 요지는, 위 황수영의 북한방문기 중 일부가 이미 '신동아'라는 다른 잡지에 게재된 이상 창작과 비평만을 문제삼아 이를 기소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마땅히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 이시영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소지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이시영 및 동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이시영은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으로서 북한문학의 실상과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사고경향을 알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책들을 소지한 것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로, 이 사건 황수영의 북한방문기 제4, 제5, 제6장은 단순히 필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본 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정도를 넘어 필자의 주관적인 집필의도하에 남한의 민주사회를 비방하는 한편 북한 체제, 이념 및 생활상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 주석 김일성의 사회 지도력 및 주체사상을 편향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지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보호범역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내용의 방문기를 시판되는 잡지에 게재하여 제작, 반포한 이상 그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셋째로, 황수영의 북한방문기 중 제1, 2장이 다른 잡지에 먼저 게재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잡지는 문제가 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 수정하여 게재하였고 이 사건 방문기 제4, 5, 6장 부분은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이유로 그 게재를 거절하였으며 또한 현법상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어느 경우에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이시영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소지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책들의 소지경위에 대하여, 민중의 바다상, 하권은 서울 종로구 소재 진명서적에서 창비사의 영업사원인 한기호를 통하여 구입한 것이고, 꽃파는 처녀는 그 출판사인 황토출판사의 사장 이승철로부터 기증을 받았으며 조선전사 중 세 2, 근대 1, 2, 3은 그 출판사인 도서출판 푸른숲의 사장 강태형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으로서 위 책들은 모두 국내출판사에서 간행되어 시내 서점에서 판매되는 일반화된 책들로서 그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국내의 저명한 문학사인 창작과 비평사의 편집주간 겸 계간지 창작과 비평의 편집위원이자 문학인으로서 북한문학의 실상과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사고경향을 알기 위하여 위 책들을 소지하고 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취득, 소지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러한 이적행위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으로서 위 각 책자들을 소지하여 이 중 민중의 바다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을 읽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2.4.14. 선고, 90도3001 판결 참조), 달리 이적행위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시영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이적표현물소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겠고, 따라서 이와 경합범으로 인정한 위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포함한 피고인 이시영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는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4. 다음 직권으로 피고인 김이구에 대한 양형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향,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김이구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부당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5.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이시영에 대한 범죄사실 중 원심판시 1의 가, 나, 다.항의 각 이적표현물소지의 국가보안법위반부분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중 압수된 중 제1호 내지 제7호 각 서적의 각 혼존과 그 기재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독직폭행등

(서울고법 1993.8.23. 선고 91노976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3년도 2권 450페이지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해자가 조사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이른바 물고문, 전기고문, 전기봉고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경찰관들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25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당사자】

피고인 김수현 외 3인

항소인 피고인들 및 공소유지담당자

【제1심 판결】

서울형사지법 1991.1.30. 선고, 88고합1441 판결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수현, 같은 백남은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김영두, 같은 최상남의 유죄 부분을 폐기한다.
- 피고인 김수현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김영두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최상남, 같은 백남은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 피고인들은 다음의 항소이유판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시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이른바 물고문·전기고문·전기봉고문 등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김수현이 원심판시 제2항의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아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비롯한 그 판시의 각 증거를 채용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공문서, 경찰공무원의 각 증언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점: 이 사건 범행내용인 전기고문과정이나 범행수단인 전기고문장치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인 바, 원심은 전기고문의 범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 김근태의 발가락 부위에 전기도선을 연결하여 봉대로 감은 다음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전류를 흘려 보내다가도 점점 길고 강하게 전류를 흘려 보내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고만

판시하고, 전기도선의 종류와 형태, 전기를 흘려 보내는 장치의 구조 및 기능 등에 관한 하등의 객관적·과학적 입증이나 설명을 일체 생략한 채 유죄를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다.

(3)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3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소유지담당자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혐의사실에 대한 추궁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가혹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그 수단·방법이 잔혹성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의 기를 꺾고 그의 의지력 파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고문행위의 대표적 사례인데다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말의 뉘우침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공소유지담당자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양형부당 등'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원심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가 제출된 바가 없으므로 원심유죄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하여<대법원 1991.3.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제1.가.(1)의 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아래 당시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들 중 피해자 김근태의 수사기관 아래 원심까지의 각 진술은 자신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법정투쟁의 일환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피해자의 진술을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아래 당시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하여 원심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일시에 해당 피고인들로부터 그 기재의 각 물고문, 전기고문, 전기봉고문 등을 당하고 피고인 김수현으로부터 원심판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과연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은 1985.9.4.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백남은은 같은 해 9.4. 피해자를 조사하고 같은 달 6.까지 2, 3회 더 피해자를 수사함에 관여하였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가혹행위 방법 등에 관하여, 원심판시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각 해당 피고인들로부터 각 그 해당 판시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팬티만을 입은 알몸상태에서 눈을 밴드로 가린 다음 각목 4~5개로 만들어진 높이가 세면대보다 약간 높은 약 1미터 정도이고 길이는 약 1.7미터 정도이며 일부분은 경사져서 세면대에 밀착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이하 편의상 고문대라고만 한다) 위에 담요를 깔고 피해자를 눕히고 담요를 말아 몸을 감싼 후 군대 허리띠 같은 줄로 발목, 무릎, 허벅지, 배 및 가슴 등 다섯 부위를 결박하고 얼굴 위에 두꺼운 수건을 덮어 써운 다음 주전자 또는 샤워기로 얼굴 위에 물을 부어서 호흡곤란 등으로 고통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물고문'을 당하고, 팬티까지 벗은 알몸상태로 위 고문대 위에 눕게 하여 결박한 다음 가슴과 사타구니 및 발 등에 물을 뿌리고 위와 같은 다소 약한 물고문을 하고 이어서 발가락 부위에 전기도선을 연결하여 봉대로 감은 다음,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전류를 보내다가 점점 강하게 전류를 흘려 보내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전기고문'을 당하였으며, 위 고문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박한 다음, 금속막대를 양발등 위에 봉대로 묶고 위 금속성막대에 전기기구를 접촉시켜서 신체에 직접 전류가 통하지 아니하나 위 금속성막대에 강한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에 의하여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전기봉고문'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문당한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여기에다가,

① 원심판시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분실 5층 15호실에서 조사받다가 앞방으로 옮겨 주사받던

원심증인 문용식이, 피해자가 조사받던 15호실에서 밤중에 비명소리를 들었고, 자신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이 ‘김근태는 독종이라 조사받기 힘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김창연 수사관이 김근태처럼 당하지 말고 몸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816,820,833쪽), 1985.10. 초순 내지 중순경 오후 2시경 구치감에서 검찰청사로 가는 지하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나 많이 달해라. 간건해라’ 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822쪽).

② 피해자의 처인 원심증인 인재근은 수사기관 아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1985.9.7. 남편이 남 영동 대공분실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알고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이후 수차 면회를 시도하여 오던 중, 같은 달 26. 검찰에 송치되던 날 14:30경 서울지방검찰청 5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호송경찰관의 부축을 받고 승강기에서 내리는 남편을 만나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남고 있다가 ‘많이 당했어’라고 말하기에 ‘어떻게 당했느냐’고 다그쳐 묻자 남영동에 편은 머뭇거리면서 ‘많이 당했어’라고 말하기에 ‘어떻게 당했느냐’고 다그쳐 묻자 남편을 부축하여 4층 서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해 경찰관과 함께 남편을 부축하여 4층 대기실로 내려갔으며, 그 대기실을 들어가기 직전 양말을 벗고 뒤풀침 상처를 보여 주어 보니 발 뒤풀침에 반경 약 2cm 정도의 머큐로크롬과 흰가루약이 발라져 있고 엄지발가락과 발등에도 검은 반점 같은 것이 있고 발가락 사이에 바늘로 찌른 듯한 상처를 확인한 점(검사의 수사기록 675쪽, 재정신청기록 110~111쪽, 공소유지담당자 수사기록 74~75쪽, 공판기록 840~842쪽),

③ 피해자의 담당변호사 원심증인 김상철은, 피해자의 검찰송치일인 1985.9.26. 오후 담당검사 김원치의 사무실 앞에서 인재근으로부터 ‘남편이 고문당하였다. 전기고문도 여러 번 당하였다’고 하여 검사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고문받은 이야기를 듣고 목비권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주고 양팔꿈치 약간 아래 쪽에 올긋불긋하였고 양말을 벗기고 양발뒤꿈치의 상처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뒤축에 약 1.3~1.5cm 정도의 동그랗게 둔한 물체에 갈린 것 같은 약간 아문 상태의 혼적을 보았고, 발가락 위, 발등에는 바늘이나 사무용핀 같은 것으로 꼭꼭 찌른 것과 같은 10여 개 이상의 1mm가 안되는 검은 점과 같은 것이 있었음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상처가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인한 상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1300~1302쪽), 피해자의 변호인이었던 원심증인 홍성우도 1985.12.9.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접견을 하였을 때 이와 같은 상처를 확인하였고 이는 물고문·전기고문에 의한 상처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153, 1156쪽),

④ 당시 피해자를 호송한 의무경찰인 원심증인 정창화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고 무척 피곤해 보였으며, 그를 호송하고 구치소로 갔는데 구치소 직원이 피해자 의 몸이 아픈 상황에 대한 현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유지담당자 수사기록 428~430쪽, 공판기록 974쪽),

⑤ 피해자는 위 검찰송치일에 담당검사인 김원치에게 경찰에서의 고문사실을 주장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의자신문시에도 그때마다 고문사실을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하여 온 점(공판기록 286쪽, ~316쪽, 검사의 수사기록 790쪽), 서울구치소 교도관인 원심증인 김용근이, 원심법정에서, 1985.12. 오후 3시경 직속상관 최덕의 지시로 피해자의 상처딱지를 감추고 있으니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방에서 이를 찾아내었으나 피해자의 항의로 돌려주었다가 최덕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난 후, 최덕과 교도관들이 피해자를 겸신하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허리춤에서 빼내어 주어 이를 받아서 부소장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163~1164쪽),

⑥ 1985.9.29.부터 1986.2.14.경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공판기록 87~98쪽)의 기재와 서울 구치소 의무과장 원심증인 김익수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공소유지담당자 수사기록 7쪽, 공판기록 963쪽)에 의하면, 1985.9. 하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때 까지 약 1년간 병사독방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발뒤꿈치 상처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말

고문에 의한 상처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해자는 두통, 소화불량, 양측하지통증 등을 호소하여
에 대한 치료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⑦ 한편 고문의 후유증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원심증인 황상익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전술과 당원의 한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물에 대한 전기실험을 한 결과 혈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전기도선을 신체에 대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혈압상승 또는 혈압강하의 현상과 통각신경에 자극을 주어 심한 통증을 나타내어 두통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고, 접촉부위에 화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공소유지담당자 수사기록 61~63쪽, 공판기록 996,997쪽), 미국인 에릭 스토버(Eric Stover)와 엘리나 나이팅게일(Elena O. Nightingale)이 편찬한 ‘신체와 정신의 파괴’(The Breaking of Bodies and Minds)에 의하면, 남미의 고문희생자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문방법과 후유증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전기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공소유지담당자의 수사기록 103~157쪽),

⑧ 피해자는 1985.9.7. 구속영장발부 후에도 그 영장의 인치장소인 용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 구금되지 아니하고 계속 위 대공분실 5층 15호실에 수감되어 있다가 송치되던 날인 9.26. 새벽에 가서 4~5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위 대공분실 5층 15호실로 왔고(공판기록 1374,1375쪽), 피해자의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검찰로 송치되어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같은 해 11.28.까지 사이에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청에 출두 중이라는 이유로 접견거부당하였고, 송치된 이후 두달 반 만인 1985.12.9.에서야 처음으로 접견이 허용되었으며(피해자의 변호인 홍성우의 진술: 공판기록 1151쪽 등), 피해자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필허가를 수차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다가 1986.2. 중순경 탄원서 집필허가가 나서 이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고문행위에 대하여 기재하는 등 113쪽에 달하는 장문의 탄원서 집필을 1986.3.3. 완료한 점(1일에 3시간 반 내지 5시간 정도씩 집필하여 15~16일 정도 소요됨)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과 당시에 서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진술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원심판시 제1의 라.의 범행시간, 원심판시 제1의 바.사.의 피고인들 이외의 범행가담자에 대하여 다소 달리 진술한 적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탄핵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8회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10회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바, 그 분량이 많고 [1985.9.5.자 제1회 자술서(15쪽), 같은 달 6.자 제2회 자술서(23쪽), 같은 날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34쪽), 같은 달 11.자 제3회 자술서(9쪽), 같은 달 14.자 제4회 자술서(73쪽), 같은 달 15.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88쪽), 같은 달 16.자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108쪽), 같은 달 17.자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24쪽), 같은 달 19.자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88쪽), 같은 달 20.자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11쪽), 같은 달 20.자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25쪽), 같은 달 21.자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47쪽), 같은 달 22.자 제5회 자술서(12쪽), 같은 달 23.자 제6회 자술서(32쪽), 같은 달 24.자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47쪽), 같은 달 25.자 제8회 자술서(21쪽), 같은 달 25.자 제8회 자술서(15쪽), 같은 달 25.자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28쪽)], 자술서의 글씨가 대체로 정돈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작성일자(제2, 4회 자술서는 이틀에 걸쳐 작성되었고, 제4, 5회 자술서의 작성일자는 피해자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분량, 내용(제4회 자술서의 일부는 문용식의 자술서 내용을 베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이 사건 범죄사실들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자술서의 분량이 많고 장기간 작성되었음에도 필적에 흐트러짐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②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장으로 있던 민청련 정책위 부의장 이을호의 앤·디·알이론에 대한 주제발표자료, 그 앤·디·알에 논거를 두고 작성한 논설 및 각종 결의문, 선언문 등이 피해자의 수사 당시 압수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위 앤·디·알이 자신의

이론이라고 수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그러한 마당이었다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 피해자의 사진(증 제39호)의 영상, 홍성진의 일부진술에 의하면 홍성진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피고인들의 직속상관인 피고인 김수현은 재정신청사건에서 담당재판부의 피의자신문 당시 1985.9.8. 피해자를 신문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월북하여 그의 형을 만나고 왔는지 여부를 추궁하였다가 진술하고 있는 점(재정신청기록 1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김영두, 최상남의 주장과 같이 1985.9.7. 귀가하여 같은 달 8.에는 원심판시 제1의 다.(1), (2)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당시증인 홍성진, 박병선, 원심증인 정현규, 이동구의 각 진술도 믿기가 어렵고, ④ 공작서류사본(증 제4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김수현이 1985.8.30.경부터 남파간첩 장수(공작명)에 대한 공작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85.9.13. 00:05경 위 장수에 대한 A-3지령문을 수신하였음을 치안본부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증인 홍성진의 진술에 의하면 위 A-3지령문은 자신이 혼자서 수신하여 풀어서 김수현에게 넘겨주어 그가 공작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2077쪽), 위 공작서류사본에는 피고인 김수현이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장에 대한 보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수현이 같은 달 13. 위 A-3지령문을 수신한 후 그날 22:00경 퇴근하여 다음날인 14. 10:00경까지 피해자를 조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원심증인 한균열, 원심 및 당시증인 홍성진의 각 일부진술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고, ⑤ 사실조회회보(증 제20호), 청사이전행사 사진첩 및 대공분실청사내역 사본(증 제33,34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오광섭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공소의 이근안이 1989.9.4. 이후에 경기도 경찰국 대공과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심판시의 제1의 나.(1),(2) 및 다.(1),(2) 및 마.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고문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미흡하고, ⑥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항소취지는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의 위 제1.가.(2)의 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전기도선의 종류와 형태, 전기를 흘려 보내는 장치의 구조 및 기능 등에 관한 하등의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판시의 전기고문의 방법만으로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특정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들을 각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변호인들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 변호인의 위 제1.가.(3)의 점 및 공소유지담당자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은 그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른 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인 점,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심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공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그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들이 20년 내지 30년간 대공수사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국가안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온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나이, 학력,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소유지담당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수현, 같은 백남은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김영두, 같은 최상남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진술, 1. 증인 김근태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형법 제125조, 제30조(피고인 김수현, 같은 김영두, 같은 백남은의 판시 제1의 각 죄), 형법 제125조(피고인 김수현의 판시 제2의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김수현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고 자격정지형을 병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환

판사 김형진

판사 김병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피고사건

(서울형사지법 1993.12.20. 선고 92고합1570 제24부판결 : 항소)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3년도 3권 445페이지

【판시사항】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피고인)이 시위진압경찰관(김춘도)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다른 시위대원들이 그를 폭행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발로 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144조 제2항

【당사자】

피고인 배병성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경영정보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 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은 1993.6.12. 판문점에서 북한 학생 대표들과 "조국반도 평화실현과 자매결연 성사를 위한 남북학생 예비회담"을 개최하되, 연세대학교에서 위 예비회담 출정식을 개최한 후 판문점으로 진출하기로 계획하여, 1993.6.12. 연세대학교에서 소속 학생 약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을 하며 교문 밖으로 진출을 기도하다가 진압경찰에게 저지되자 판문점 진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일대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 약 1,500여 명이 불법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는바, 피고인은 1993.6. 초순경 경기도 용인읍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내의 대자보를 통하여 연세대학교에서 위 집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11. 17:00경 연세대에 도착, 출정식 전야제 행사에 참가하고, 같은 달 12. 11:00경 한총련 대표단들의 뒤를 따라 교문쪽으로 진행하며, "회담성사, 남북교류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다시 교내로 집결한 후 연신내역 부근에 집결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집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1993.6.12. 15: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연신내 사거리에서 용인성남지구총학생회연합(약칭 용성총련, 이하 '용성총련'이라 한다) 의장 공소의 장상수로부터 시위를 주도하라는 부탁을 받고, 용성총련 소속 시위 학생들의 대열을 정비하고, 용성총련 소속 성명 불상 기수가 들고 있던 "용성총련 애국선봉대"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용성총련 소속 성명불상 시위학생들을 포함 시위 학생 300여 명을 인도, "판문점회담 성사시키자", "조국통일 이룩하자", "자주교류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선두에 서서 시위대를 지휘하고, 다시 학생 1,500여 명의 본대와 합류, 구파발 방면으로 시위대를 인도하다가 경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되자 같은 동 조홍은행 갈현지점 옆 골목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시위 학생들은 시위 진압 경찰관들을 향하여 벽돌 등을 던지고, 깃대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시위진압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경찰이 후퇴하자 다시 피고인은 구파발 방면으로 약 200여 명의 시위대를 인도, 연좌하게 한 다음 "조국통일, 회담성사"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를 부르며 이른바 인간사슬을 형성하며 도로에 연좌하고 눕는 등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17: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신내 사거리에서 구파발 방면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이진광, 안윤식, 유종석, 정해천, 최낙운, 임대권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가. 불법집회 및 시위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학생이고 장기간 구금된 점 등 정상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약 500여 명의 시위 학생들이 진압경찰관에 밀려 은평구 갈현동 392 소재 거북당제과점 앞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거북당제과점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던 시위 학생들의 선두에 서서 시위대열을 정비한 후 경찰관들이 뒤로 빠지자, 대로상에 포위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구파발 방면 대로 쪽으로 시위대를 지휘하여 밀고 나오고, 경찰관들이 다시 추격을 하면 뒤로 후퇴하는 것을 2, 3회 정도 반복하던 과정에서 거북당제과점 쪽의 시위대열 선두에 서 있어서, 경찰관들이 추격을 시작하였을 때 뒤에 있던 시위대원들로 인하여 진로가 막혀 뒤로 도망가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하여 골목 주변의 시민들 사이로 들어가 시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위를 구경하다가, 수일 전 한총련 출범식 후 가두시위를 전개하다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안경이 깨어지고 이

빨이 부러지는 등 피해를 당하여 시위 진압 경찰관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공소의 성명불상 6, 7명의 시위 학생들과 공동하여, 같은 날 16:05경에서 16:15경 사이에 위 거북당제 과점 옆에서 다시 경찰관들이 대로방면으로 빠지고, 그 뒤를 학생들이 밀고 나오자, 다른 경찰관들보다 뒤에 떨어져서 걸어 나오면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김춘도를 폭행하고 시위 대열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제과점 앞 골목 안쪽으로 달려가며 시위진압 근무중이던 위 김춘도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차 동인을 쓰러지게 하고, 위 성명불상 시위대원 6, 7명은 쓰러진 위 김춘도의 온 몸을 발로 차고 밟아, 다중의 위력으로 시위 진압 근무중이던 위 김춘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7경 같은 동 소재 청구성심병원에서 심장 및 폐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김춘도를 발로 차서 쓰러진 위 김춘도를 밟아, 다른 경찰관들에 대하여 돌을 던지는 등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 김춘도를 밟아 죽인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과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김춘도의 가슴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제3회 자술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신춘균의 수사기관 아래에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위 신춘균의 각 진술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신춘균은 수사기관 아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하여 당시 시위구경을 하고 있다가 위 김춘도를 밟아 죽인 범인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바로 그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하나, 그 인상착의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내용을 보면, (1) 범인을 본 시간에 대하여는 10여 초 동안(경찰 2회조서)에서 1, 2초(공판전 증인신문)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수초간, 또는 짧은 순간으로, (2) 범인의 인상 중 눈매에 대하여는 아무 진술이 없다가 눈매가 날카롭다(공판전 증인신문 및 이 법정)로, (3) 범인의 복장에 대하여 옷색깔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따라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상의는 밝은 색이고 하의는 어두운색 같다(경찰 1회조서), 상의가 밝은색의 남방(경찰 2회 조서), 노란 바탕에 파란색 무늬(경찰 진술서), 상의는 특이한 무늬의 처음 보는 “야리꾸리” 한 남방 같은 것이고, 하의는 청자색깔보다 짙은 편인데 다시 보면 기억할 수 있는 것(검찰 1회조서), 상의가 기억에 남고 이상한 무늬가 있는 “야리꾸리” 한 남방 같은 것으로 무슨 저런 이상한 옷을 입었나 생각해 기억이 남고 그 기억으로 범인으로 단정한다(검찰 2회조서)로, (4) 위 김춘도의 당시 모습에 대하여도 그 자리에서 도로에 바로 앞으로 쓰러졌고 그때 안전모자가 도로바닥에 떨어졌다(경찰 1회조서), 뒤로 주춤하다가 앞으로 한두발 걸어가다가 쓰러질 때 모자가 벗겨졌다(검찰 1회조서), 뒤로 휘청하다가 앞으로 한두발 걸어가다가 앞으로 쓰러지고 그 후 밟고 차는 과정에서 안전모가 벗겨졌다(공판전 증인신문)로 바뀌는 등으로 그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춘균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기억이 명확치 않은 것인지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위 신춘균은 경찰에서 제2회 진술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후 그 영상을 기초로 하여 그의 기억을 새로이 형성하여 잊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위에는 시위진압경찰관들 및 구경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범인이 위 김춘도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공소의 남정극, 이재덕, 김영선, 유종석, 정해천, 이금용(이재덕은 위 신춘균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다) 등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위 신춘균의 진술부분과 상당 부분 상이[(남정극 -머리 긴편, 베이지바지, 흰색계통 운동화), (이재덕-키가 167cm), (김영선-흰 운동화), (유종석-어두운 남방), (정해천-흰색티셔츠, 청바지, 흰 운동화), (이금용-상의 체크무늬)]할 뿐만 아니라 위 다른 목격자들은 아무도 피고인이 그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특히 그들 중 유종석, 정해천, 이금용 등은 시위진압 및 체포활동을 하는 경찰관들로서 사건 직후 시위현장을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그 사진들 중에서 피고인의 영상이 뚜렷이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전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하였고, 그중 위 정해천은 사진 대조과정에서 다른 시위참가자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많은 목격자들 중 오로지 위 신춘균의 진술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배척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증거법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 사건 당시 시위를 주도한 피고인은 위 김춘도가 쓰러진 후에도 그 부근에서 진압경찰을 폭행한 시위자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제지만류하기도 하고 구호를 선창하거나, 시위대열을 정돈하는 등 계속하여 그 자신을 경찰관들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였으며, 그 후 위 김춘도가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다른 곳에 은신 잠적하지 않고 당일 저녁 자신의 하숙집에 들리고 또한 학기말고사를 정상적으로 치른 후 강릉의 고향집에서 기거하던 중 1993.6.27. 경찰에 체포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은 시위진압 경찰인 위 김춘도를 밟아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의 행적이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기록상 피고인을 범인으로 불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는 하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위 신춘균의 각 진술에 대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 밖에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각 증거들 중 정진석, 최종운의 수사기관 아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신춘균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받은 경위 또는 위 신춘균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 진술들에 불과할 뿐이며, 진압경찰인 이진광, 안윤식, 유종석, 정해천, 이금용의 각 수사기관 아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이진광, 안윤식은 범인이 위 김춘도를 밟아 차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의 각 진술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김춘도를 밟아 차는 범인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김춘도를 밟아 차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김춘도의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는 나아가 따져 볼 것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변동걸

판사 정호건

판사 김인겸

국가보안법위반 (부산지법 1995.1.17. 선고 94고합1325 판결 : 헌법재판소 미결정)

【출 전】

하급심판결집 1995년도 1권 532페이지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례

【관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와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제2항

【당사자】

피고인 정은경

변호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정은경은 1994.11.12. 부산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어(위 법원 94고합1325호 사건) 재판계속중에 있는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 : 피고인은 1987.2.경 부산 소재 성심여상을 졸업하고 1988.3.경 경남 양산군 소재 대우 정밀에 입사하여 동사 노조 여성부장으로 있으면서 동사 노조에서 주관하는 각종 투쟁결의대회 및 임투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일하는 자의 철학' '마침내 전선에 서다' 등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왜곡된 경제개발로 인하여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모순이 심화된 사회로서 이러한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실현하는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바,

(1) 1993.6.경 부산역광장에서 개최된 임단투 전진대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 (International Socialists, 약칭 IS)그룹 조직원인 공소의 김동철 및 박매령으로부터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 기관지인 '지지와 연대'신문을 구입하면서 동인들에게 포섭되어 1994.1.16.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동아대학교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러시아혁명에서의 레닌파 트로츠키에 대하여 토론하고 동년 3. 중순경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토론하고 동년 4.24. 동아대학교 인문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레닌 전기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년 5.8.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당파 계급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월 22.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제국주의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년 6.19.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정세와 사회주의자의 임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월 29.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공동전선에 대하여 학습토론을 하면서 동그룹의 강령요지는

- 우리의 전통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루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 우리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국제사회주의 사상을 트로츠키, 그람시가 옹호하여 더욱 발전시켰다고 믿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 위로부터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 우리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지지한다.
- 우리는 노동자들이 경제와 정치의 사회생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를 지지하며 노동자계급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를 청산하고 사회주의를 창출할 유일한 사회세력이라고 생각한다.
- 노동자들 자신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 개혁이 아니라 혁명
- 우리는 현재의 체제가 개혁을 통해서는 변혁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폭력혁명, 계급혁명을 통해 현체제를 전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혁명의 주체는 민중이 아니라 노동자
- 노동자들의 집단행동만이 자본주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그에 따라 정치적 힘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계급만을 혁명을 지도할 정치세력으로 여긴다.
-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극소수인 자본가계급의 필연적이고 필사적인 반혁명기도를 분쇄하고 계급없는 사회, 그리하여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체제일 뿐이다.
- 혁명의 표적은 브르주아 국가
- 남한은 미제국주의와 남한 토착 부르주아지가 소련 제국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전력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한대중의 반제·반자본투쟁을 제압하기 위해 서로 합작하여 만든 것이다.
- 남한에서 일정에 올라있는 혁명은 민족해방혁명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혁명이다.
- 혁명정당
-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을 전위로 조직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있을 때에만 노동자운동이 자본가국가를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노동자국가를 세울 수 있다.
- 현재의 임무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루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의 공산주의 사상과 전통을 체제에 도전하는 투사와 활동가들에게 전파하는 데 있다. 사상과 투쟁의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혁명적 노동자당이 건설될 수 있다.
- 계급투쟁적 노동조합운동
- 자본주의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면 단위노동조합 이상의 지도부로로부터 독립하여 자본주의체제가 요구하는 바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평조합원 운동이 필요하다.

- 노동자정부의 정책

- 노동자계급의 평의회와 민병대가 노동자당의 정치적 지도에 힘입어 현체제를 전복하고 세우게 될 노동자정부는 수립 첫날 모든 토지의 국유화를 선포하고 농업집산화를 고무, 장려할 것이다.
- 또한 기간산업체와 대기업체부터 먼저 국유화하기 시작하여 모든 중소기업체들의 국유화로 신속하게 나아갈 것이다.
- 새로 수립될 노동자정부는 즉시 인터내셔널 창건에 착수할 것이다.
-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
 - 국제사회주의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 안에서 모든 민족을 통일하는 것이다.
 - 남한의 국제사회주의자들에게는 조국이 없으므로 남북한의 지배계급과 그 국가들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
 - 우리는 민족의 수호자가 아니라 계급의 수호자다.

규약의 요지는

- 회원은 매월 금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반드시 가명을 사용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조직에서 간행되는 문건은 철저히 학습하여야 한다.

조직체계는

- 중앙조직으로 총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통제위원회, 편집부, 산업국, 사무국, 교육국 등
- 지방조직으로 경인지역, 영남지역, 중부지역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지부(Branch)로 구성되어 지부장, 지부위원, 평조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휘체제는
 - 원칙상 중앙에서 각 지구별 위원장을 통하여 지시를 하고 정기적으로 중앙조직원이 지부 조직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조직원 상호간에는 가급적 음성사서함을 이용한다.
- 등으로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로 이어지는 영구 혁명론에 입각하여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혁명인 노동자계급혁명을 지도할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고 남한 자본주의체제를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으로 전복하여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는 한편 이를 국외로 확산시켜 국제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단체인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동년 7.경 부산에서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 조직원인 김동철 등에게 "노동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쟁을 하여야 하는데 단지 자기 사업장에서 해고수당 요구투쟁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혁명정당의 지도자가 필요하며 혁명정당 건설을 당면임무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에서 활동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승훈, 봇대, 혜진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노동자연대'신문 정기구독자를 담당하고 동년 8.21. 동아대학교 공대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당과 계급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년 9.4.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혁명적 신문과 북한국가자본주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월 25.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아나키즘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년 10.2.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대학교 법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불세비키와 러시아혁명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월 9.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영구혁명 및 평가와 전망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노동자연대'신문 94년 8월 호에 '내가 살아온 길'이라는 기사를 쓰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인 소위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에 가입하고, (2)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역사발전의 합법적 성

과 계급투쟁론을 주장하면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적 강점하에 있는 신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으므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하여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모략선전하는 한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국가보안법폐지 등이 조국통일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고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은 전향과 같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1994.4.28.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5·1 노동절' 영남집회총책인 서울 중앙위원 공소의 신순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동절 준비토론회'에 참석하여

- 폭력경찰로 무장한 지배계급의 국가는 그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대상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김영삼 정권은 말 그대로 박살내야 한다.

- 신진노동자들이 노사협조주의 세력과 김영삼 정권에 협조적인 정치단체들의 세력의 영향력을 분쇄하고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지켜내고 나아가 정세반전을 위하여 김영삼 정권에 대한 총반격의 계급투쟁정신을 펼쳐낼 수 있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투쟁으로 집결해야 한다.

- 김영삼정권을 박살내는 것, 그것은 단위사업장의 파업투쟁으로부터 시작한다. 노동자계급 연대파업전선은 전노대의 쟁의발생시기 집중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부분들이 치고 나아가는 선제행동에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임금억제선을 무시하라'와 —김영삼 정부의 94년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강요요, 노동자운동에 대한 국가억압 강화에 지나지 않음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국가경쟁력 강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인 국가간 세력 경쟁의 직접적 표현으로서 '국가'와 '국민'과 '민족'의 이름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려는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정면으로 맞서려면 '국가'와 '국민'과 '민족'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계급'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 김영삼은 여론과 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동을 억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탄압법도 어겨야 한다. 여론과 법 그 자체가 억압 도구이다. "진정한 국가경쟁력 강화" 운운하면서 여론을 의식하고 계속 개악되는 법을 지키려 다가는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투쟁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여론은 강자의 편이다." "이기면 합법이고 지면 불법이다."는 계급투쟁의 진리를 말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경쟁력 강화는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와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온갖 언론 매체를 소수의 지배계급이 독점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러한 독점의 결과로 "일상적 시기에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

-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투쟁을 확산하고 조직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의식을 성장시킨다.

-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동자 투쟁에 스스로를 개입시켜야 할 뿐 아니라 거리에서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집시법의 철폐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투쟁이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과 결합될 때만이 가두에서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폭력'이 허용될 것이다.

- 연행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1. 이름까지도 말하지 않는 '완전 목비'를 하자. 2. 조서 쓰기를 거부하자. 3. 조서에 서명날인(지장찍기)를 거부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집회에서의 연행과 구속' 유인물 각 1부를 구입하여 읽어보고,

나. 1994.8.21.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동그룹 중앙위원회원인 공소의 주제로부터 당과 계급 주제로 학습을 받고 위 김동철 및 공소의 이영표로부터 동그룹 명의로 발행된

- 주사파는 우리 운동의 일부이다. 주사파는 지배자들의 탄압에 의해 궤멸되어서는 안된다. 주사파는 노동자 운동 속에서 평가받고 겸증되어야지 지배자들의 비열한 마녀사냥으로 파산해서는 결코 안된다.

- '대우기전'과 '금호타이어'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연대와 전체 계급의 단결을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대안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의 필요성을 절실히 배울 수 있다면 이번 투쟁은 우리 편의 완전한 승리이다.

- 김영삼은 이렇게 노동자들한테서 더 많이 견은 세금을 무기구매와 같은 체제를 위한 사회간접 자본 확충에다 제일 많이 쓰고 있다. 반면,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

- 국립 경상대 교수들의 강의교재와 내용을 사법의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정부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상대 교수들이 당하도록 두면 안된다. 우리 편 전체는 지금 당장 경상대 교수들을 방어하기 위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를 지원해야 한다.

- 김영삼 정권은 오로지 경찰복 입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권리,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일 권리, 잡아들인 사람들을 마구 팔 권리, 나서 안됐다고 말할 권리 뜻하는 모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자연대' 8월 특별호 1부를 구입하여 읽어보고,

다. 1994.9.1.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 신축학생회관경제사회연구회 써클룸에서 위 김동철로부터

- 혁명적 지도자와 신문 사이의 관계는 노동자투쟁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혁명가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고유한 특징이다.

- 신문의 중요성은 혁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목표에 있는 것이다.

- 혁명가들은 일상적 시기에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인민대중의 경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지배계급과의 사상투쟁에서 이길 수 없다. 혁명가들은 혁명적 세계관이 지배계급의 사상보다 훨씬 더 잘들어맞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혁명적 조류가 성공을 거두려면 언제나 그 조류는 원칙과 경험과 당면과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하며 그 수단이 신문이다.

혁명적 신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적 신문은 원칙과 경험과 당면과제를 연결시키는 기관이고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메우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 신문은 집단적 선전가이자 집단적 선동가이다. 또한 신문은 집단적 조직자이다.

- 혁명적 신문은 피억압계급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원칙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비합법 신문을 통해서만 사회의 혁명적 전복을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고 비합법 형태의 조직을 통해서만 혁명을 준비할 수 있다.

- 혁명적 신문이 혁명적 상승기에 성공을 거두려면, 신문은 혁명적 사상들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들을 표현해야 한다.

- 침체기의 신문은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들이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을 방해하는 데 지면을 할애해야 한다. 침체기의 신문이 수행해야 하는 주된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념적으로 무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 신문은 계급투쟁의 모든 측면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망명자들, 계속 뒤따라다니는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합법 조직을 건설하려 하는 지하활동가들, 그리고 공장에서 임금과 식량배급 등

을 둘러싸고 선동을 하는 노동자 투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혁명적 신문' 1부를 구입하여 읽어본 후 가지고 있다가 동월 4.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위 '혁명적 신문'과 북한국가자본주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라. 1994.10.9.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서울 중앙조직에서 내려온 남자조직원의 발제로 영구혁명 및 평가와 전망에 대하여 강의와 토론 후 위 김동철로부터

- 김영삼 정부는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자기 계급에게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 김영삼은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공격을 감행하여 자기 계급의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노동자들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였다.

- 노동자들은 부문적 전투에서 군사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이번 투쟁을 통하여 김영삼 정부의 취약함과 무능력을 완전히 폭로했고 부문적 대응이 아닌 전체 계급적 대응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 우리는 용집력있는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중앙집중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신문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후 신문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시간이 단축되어 나가는 것은 당건설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문의 필자·판매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적·기술적·물질적 지원·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스탈린주의에도 반대하지만 자유주의도 반대한다. 모든 권위에 반대하는 조직상의 자유주의는 레닌주의 조직건설을 방해한다. 레닌주의 조직의 위계구조와 명령지시는 설득에 기초하며 우리도 설득에 기초하면서 강력한 규율을 가지는 중앙집중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 모든 활동과 일상에서 아마추어적 근성을 버리고 프로페셔널을 가진 사회주의자로 단련되어야 한다. 더구나 불법상황에서는 더욱더 절실하다. 불세비키는 17% 정도의 직업혁명가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고 모든 시간을 혁명활동에 투여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들이 필요하다.

- 끊임없는 외향적 활동 속에서만 단련되고 훈련된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중앙집중주의 강화를 위한 엑스포 결의문' 1부를 구입하여 읽어보고,

마. 1991.12. 하순경 부산대학교 앞 사회과학서점에서 돌베개출판사가 발간한

- 해방 당시 미국의 정책집단은 완고한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사물을 오로지 반공주의란 색안경을 통해 보고 있었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적 편견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한국민중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순수한 열망에 대해 불필요한 적대감만을 유발시키고 말았다.

- 국토양단의 위기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짓뭉개진 민족의 성스러운 주권을 되찾기 위한 한국민중의 투철한 의지는 드디어 2·1 구국투쟁의 불길로 치솟아 올랐고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조선위원회를 반대한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우어 주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등을 요구하였다.

- 1950.6.25. 본격적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38선에서는 남북한 군대간의 대소규모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핵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불길이 지펴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남북한 양측 모두가 교전을 주도한 바 있으며 어느 쪽도 38선을 일반적인 국경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실제 전투에서는 북한이 패배한 듯 하다. 그 이유는 남한이 대부분의 군대를 38선 지역에 배치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북한은 주요 병력을 예비로 남겨둔 채 내무성 휘하의 경무장된 경찰력으로만 38선을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6·25 전쟁 중 남한에는 사람을 죽여 배를 채우는 소위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졌고 온갖 부조리와 사기, 협잡이 전쟁수행의 미명하에 백주에 횡행하는 등 혼란이 극에 달했다.
- 한편 북한의 지도자들은 전례 없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농민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의지에 호소함으로써 식량생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애썼다.

- 주한미군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지켜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위협하는 사회주의권과 민족해방 운동세력에 대해 적극공세를 취하는 전진적 임무를 맡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과

- 이승만과 한민당 일파가 미국에 달라붙어 단독정부의 수립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남한지배를 위해 모든 충성을 다바쳤다는 사실은 결코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 자신은 자유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실현 등 바로 미국이 강조해 왔던 갖가지의 이상의 추구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는 한낱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집단들이 오로지 사리사욕에 의해 미국을 추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미국 자신이었다.

- 북한은 식민지유산의 청산과 전쟁피해 복구라는 특수한 요구가 결합됨으로써 별다른 폭력의 수반 없이 인민대중의 자발적 참여하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 당시 이같은 북한의 사회주의화는 식민지지배를 경험했던 나라들 중에서 유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결과 북한은 1946년 인민민주주의적 개혁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발전에서도 제3세계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 북한이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수탈로 인해 역사적으로 축적된 기술이 매우 낮고 그나마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탁월한 열정과 특유의 창의성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자력갱생, 자립경제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만든 근본적인 요소였던 것이다.

- 북한이 자립경제건설을 추구하게 된 것은 이미 1945년 해방의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보다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천리마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이다.

- 여기서의 천리마는 엄청난 속도로 행복의 나라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전설 속의 날개 달린 말로서 급속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를 위시한 북한의 인민대중은 지도자들의 호소에 대해 열렬히 호응하고 나섰으며 작업반, 공장, 직장, 농장 상호간에 기술혁신과 생산증대를 향한 집단적 경쟁이 뜨겁게 불붙기 시작하였다.

-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주민들 사이에서의 김일성의 권위는 절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으로서,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준 은인으로서 미국의 전면적인 침략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출한 탁월한 지도자로 부각되었고 신화적인 능력이 북한주민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현실에 막스·레닌주의의 일반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우리의 역사, 실제상황, 우리 자신의 역량, 전통, 요구, 우리 인민의 의식 등을 정확하고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다.

- 대체적으로 볼 때 주체사상의 형성은 자신의 실정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교훈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출발한 주체사상은 그것이 실천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에서 보다 보편적인 기초를 획득하게 되었다.

- 미국은 박정권으로 하여금 기만적인 남북대화에 나서도록 사주함으로써 남북대화라는 사기극을 연출하도록 했다. 남한의 박정희정권이 남북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의도는 보다 더 기만적이고

교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 박정권은 안팎으로 심각한 궁지에 몰린 위기를 폭압적인 파쇼체제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남북간의 통일협상을 교묘히 활용하려고 기도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를 각 1권 구입하여 1994.10.15.까지 부산 금정구 서동 297의 439 주거지에 보관하며 읽어보고

바. 1991.1. 초순경 경남 양산군 소재 대우정밀 노조사무실에서 일빛출판사가 발간한

- 자본가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곧바로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창조된 가치를 자본가가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생산과정이란 노동자를 착취하는 과정이며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한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진다.

- 또한 생산이 계속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높아지는 인류의 진보 역시 노동자에게는 적대적으로 된다. 생산력의 증대는 상대적

- 서구의 많은 노동조합들이 개량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본가들의 책략에 의해 부추겨 지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개량주의 관점에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며 자본가들의 착취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 진정한 노동자의 입장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착취, 생산수단이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어 소수 자본가의 소유가 됨으로써 계속되는 착취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비롯하나 피지배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지배도구이다. 지난 89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 당시 정부는 육·해·공군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권력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사권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국가권력이 자본가계급을 돋는 것은 바로 국가권력이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물리적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제국주의 자본의 횡포와 노동자의 생존권 압살을 이 나라 정권이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외자도입법이요, 노동악법이다. 제 나라 노동자들의 피땀, 목숨을 팔아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독점자본, 정권의 본질은 분명하다.

- 따라서 우리 노동자는 외자도입법, 노동악법 등 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도투쟁을 벌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반제국주의 투쟁, 반독점자본 투쟁을 통해 민족해방과 노동해방의 새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 노동해방의 과정은 사적 소유를 폐지해 가는 과정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중심문제가 된다. 현재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이며 이 국가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장악할 때만 자본가계급의 지배가 철폐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변혁의 정치혁명과정이다.

- 노동자계급의 권리은 저항하게 될 낡은 착취계급, 즉 자본가계급의 도발을 제압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전체 근로대중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자본주의의 개인적 소유가 폐지될 때, 즉 자본가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만들 때 자본가에 의한 착취가 사라지므로 노동자들의 개인 소유물은 더욱 많아지고 풍부해지는 것이다.

- 사적 소유의 폐지가 두려운 것은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들뿐이며 노동자는 임금 노예라는 쇠사슬 이외에는 잊을 것이 없다.

- 사회주의 건설기에는 노동자계급의 독재가 필요하고 국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재도 필요하지 않고 국가도 소멸된다. 현재 지구상에 이같은 의미의 공산주의 사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많은 사회들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

- 미제의 남한에 대한 지배는 국내의 지배계급이 없으면 그 힘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제국주의의 남한에 대한 지배는 남한의 독점자본, 독재권력 등 지배계급과의 동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남한의 독점자본 및 독재권력과의 투쟁과정과 일치하게 된다.

- 노동해방이란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독점자본과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반제·반독점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이라고 부른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자의 경제학' 1권을 구입하여 1994.10.15.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읽어봄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제(1)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제(2)항은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제청결정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다.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는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살펴건대 위 조항들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죄형법정주의와 제37조 제2항 후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규정 등 헌법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의심이 있다.

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의 국가기본질서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밀접한 데 있어서 집단보다도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집단 또는 반대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적 요건의 하나일 뿐 아니라 그 대표적 징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가치표현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참여의 권리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전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리와 가치는 사상의 자유경쟁과 도전을 거쳐 새로운 진리와 가치로 발전 또는 창조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발전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와 가치의 발전과 창조는 때로는 기존의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상·이념에 반한다 하여 무조건 배척하거나 억제할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유해한 사상과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가급적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제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대중매체가 고도로 발달되고 조직화되어 사상의 전달과 형성이 인위적으로 조작가능한 시대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에 의한 경쟁원리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상의 경쟁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표현의 자유를 그 대표적 징표로 삼고 심지어 기존의 사상과 가치체계를 부정하는 사상의 표현에 대해서조차도 관용을 베푸는 것은 사상의 경쟁을 통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보전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체계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까지도 관용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 밖에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의 규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체의 방어를 위하여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기존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에는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상, 다양한 생활방식 즉 다원성이 보장되는 사회로서 우리 헌법 또한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바이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하고도 전제가 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정치 국가라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러기에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외에도 사전억제금지의 이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의 합헌성추정의 배제원칙,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 비교형량의 원칙과 이중기준의 원칙 등이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 이를 표현하는 자유는 그 제한에 있어서 위 여러 원칙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표현의 자유라면 보다 엄격하게 그 제한법률을 규정하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를 처벌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또한 제5항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른바 표현범죄에 대한 반국가활동성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 이르러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국가변란을 선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위험

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 즉 기존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상임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행위라면 위 조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사상의 다양성을 사전에 봉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우정밀의 한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이며 조직적인 모임을 가지며 토론하고 '노동자 연대'라는 같은 성향의 정치신문을 읽어본 것으로서 비록 그 목표로서 주장하는 바가 기존의 체제와는 상반되는 노동자당을 건설하고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이 되는 사회를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의 북한 사회도 노동자들의 혁명이 필요한 왜곡된 사회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비록 목표달성을 위한 현재 가능한 수단으로서 과격한 방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혁명의 구체적 실현을 준비하거나 그를 위하여 폭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이 가지는 생각들에 관하여 서로 토론을 거듭한 순수이념단체적인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내용이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표현이 북한이 종전에 펴온 간접침략정책에 의한 선전내용과 흡사하여 그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철저하게 금지되어 온 것이어서, 그 내용의 실제적 위험성보다도 금기된 표현물이 갖는 상징적 위험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보이나 피고인이 참여한 모임은 북한도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상징적 위험성도 약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상과 표현들도 사상의 경쟁시장에 상장되면 그 허구성과 무가치한 실체가 드러나서 저절로 스러져 버릴 표현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금기시함으로써 상징적 위험성을 지니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사건 표현물의 내용이 기존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내용이어서 당장은 당혹스럽고 불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감하게 허용, 피고인이 주장하는 노동자당의 결성 등도 허용하여 현실에서의 사상의 경쟁을 거쳐 현실정치의 상황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그 상징적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도라고 보인다.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갖추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현재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달리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대의 변화에 비추어서도 지금은 과거와 달리 사상의 포용성을 한층 더 높여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보이는바, 서구의 여러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세계화를 향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비판적 사상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엄격성의 기준에 철저하지 못하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 후문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능성의 소지가 있다 고 보인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민이 처벌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거나 막연하고 불명확한 처벌법규는 자의적인 행정권의 행사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 내지 법치주의의 이념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의 법률이라고 할 것인데,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 재판소에서 제1항의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문언을 그대로 해석적용한다면 헌법상의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범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반하고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되며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지향의 규정에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위 조항의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위 규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란 모두의 요건이 추가되었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이라는 부분은 삭제되면서 구별 같은 조 제2항의 국외공산계열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1항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뀐 바 있다.

그런데 개정조항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면은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남아 있어 기왕에 논의되었던 위헌의 시비를 아직까지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란 모두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기왕의 위헌의 소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며 무엇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아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그 해석의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르는 해석기관의 자의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변란'이라는 개념도 그 의미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는데 형법상의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한 자세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국가변란'이 형법상 규정된 국헌문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의 행위는 그 행위가 가지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을 가려내어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각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 처벌도 가볍지 아니하여 국가보안법의 위 제 규정들은 형법규정과 중복되는 점도 있다고 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원칙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어 그 필요성에서도 어느 정도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태범(재판장)

황규훈

김연하

[별지]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첫머리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력의 소지자인 바, 북한공산괴뢰집단(이하 북괴라 약칭함)은 정부를 침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구성된 반국가단체이고, 이른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약칭함)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불법 조직되고 북괴노선에 따라 대남적화통일을 그들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재일교포나 모국유학생 또는 내국인 등을 포섭하여 간첩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지령을 주어 국내에 침투시키는 등 북괴 대남공작 우회침투 전진기지로서 대남 적화통일에 광분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8·15해방후 재일조선인 연맹에 가입하였다가 1955.5.경 조총련결성후 조총련 요코스가지부 시다마치분회 오스반원(横須賀市支部 下町分會 大津班員)으로 활동중 본적지를 왕래할 목적으로 1958.6.19. 외국인 등록시 위 요코스가시 우라가시소(浦賀市所)에 찾아가 국적 “조선”을 “한국”으로 변경 등록하여 재일한국인 거류민단(이하 민단이라 약칭함)원의 신분을 취득하였음에도 계속 조총련 상공인으로 활동하면서 처와 1남 2녀 등의 가족들은 조선적으로 잔류시키고,

○ 1965.3.경 가나가와깨 요코하마시 니시구 구보초 244로 이거후 집근처에 있는 조총련 니시 요코하마지부(西横浜支部)에 출입하면서 동 지부 상공인으로 활동하던 중 그곳에 출입하는 동 지부 상공회원인 강덕주(66세 가량, 금융업), 박태권(63세 가량, 토목청부업), 정차근(52세 가량, 페인트업), 오인덕(67세 가량, 염색업) 등과 친교를 유지하면서 동년 5.경 위 강덕주로부터 동 지부 운영 자금을 제공하자는 제의에 응낙하여 위 4명과 함께 일화 500만엔 씩 도합 2,500만엔을 각출제공하고 또한 그때부터 1984.2.까지 매년 50,000엔을 동 상공회지부에 제공하므로써 자진지원하고,

○ 1965.6.경 조총련 가나가와깨 본부 집행위원 겸 니시 요코하마지부 상공회원으로서 동 지부에 자주 출입하는 북괴지도원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김광현(金光憲, 이하 반국가단체구성원이라 약칭함)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동 지부 상공인들과 같이 지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후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인으로부터 “조총련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동년 12.경까지 매월 1,2회 가량 동 지부 사무실에서 동인을 만나 근처의 “센스시야”, “요시노야” 초밥집에서 주식을 제공받으면서,

- 북조선은 공업과 농업이 모두 발전하여 남조선보다 살기가 좋다.

- 6·25 전쟁은 남한이 먼저 일으킨 것이다.

- 남조선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통일이 안된다.

- 우리들은 남조선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등의 북괴 우월성에 대한 선전교양을 받아온으로써 은연 중 북괴를 동경하여 오던 중, 동년 12.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센스시야” 초밥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주효를 대접받으면서 “심상, 그 동안 우리 조총련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국통일 사업을 위해서 나와 같이 손잡고 일해 봅시다”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과거 불우한 성장과정과 지도원 김광현의 북괴선전 교양으로 한반도는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힘껏 일해 보겠다”라고 굳게 약수를 나누고 응낙하므로써 동인에게 포섭되고,

○ 1966.2.초순 일자불상경 시즈오카깨 아다미온천 오노야(静岡懸 热海温泉 大野) 호텔에서 개최된 조총련 가나가와깨 본부 및 니시 요코하마지부 상공인 신년회 모임에 참석하여 지도원 김광현 등 조총련 상공인 약 25명과 같이 동 호텔에서 1박하면서 금강산, 평양시가지 발전상, 협동농장 고속도로, 예술공연장면 등이 담긴 북괴선전영화를 관람하고 지도원 김광현과 동 호텔 다방에서 만나 “얼마 후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다”라고 보고한 후 동 김광현으로부터

- 한국의 농촌은 아직도 발전된 것이 없을 것이다.

-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아주 못산다.

- 북조선은 빈부의 차별없이 누구나 다같이 살기좋은 곳이다.

- 한국은 자유가 있다고 하나 일본과는 틀리는 자유다.

- 한국에 가서 친척들에게 북조선과 조총련에 대한 선전을 하라.

-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실정을 잘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교양과 지령을 받고,

○ 1966.2.28.부터 1970.6.14.까지 전후 4회에 걸쳐 대한민국을 출입국하여 본적지인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도시는 다소 발전하였으나 농촌은 일제때와 별로 변함없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농지정리도 안되었으며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못사는 사람은 보리밥만 먹는다는 등 한국의 도시 및 농촌실태를 탐지, 수집하여 귀일후 지도원 김광현에게 보고하고,

○ 1966.2.부터 1971.12.경까지 매년 2.초순 아다미온천 오노야호텔에서 개최된 조총련 가나가와깨 본부 및 니시 요코하마지부 상공인 신년회모임 및 위 지부 사무실 부근 “센스시야”, “요시노야” 초밥집 등지에서 2-3개월에 1회씩 지도원 김광현과 회합하여 동인으로부터

- 북조선의 농촌은 협동농장으로 농지정리가 잘되어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빈부차이 없이 살기좋은 곳이다.

- 북조선은 중공업이 발달되고 전기가 남아 돌아간다.

- 북조선은 학비와 의료비를 국가에서 무료제공하는 지상낙원이다.

- 남조선은 돈많은 사람만 잘살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못살고 있다.

- 민단은 학교가 몇군데 없는데 조총련은 공화국에서 많은 돈을 보태주어 여러곳에 학교가 있고 대학까지 있다.

- 6·25전쟁은 남조선에서 먼저 북침한 것이다.

- 조선이 통일되려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 우리는 남조선 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등의 북괴 및 조총련에 대한 선전교양을 받아 오다가,

○ 1972.2.초순경 아다미온천 오노야호텔에서 개최된 조총련 가나가와깨 본부 및 니시 요코하마지부 상공인 신년회모임에 참석하여 동 회원 20여명과 같이 1박하면서 평양시가지, 고층건물 등 발전상, 협동농장 기계화 영농장면 등이 나오는 북괴선전영화를 관람하고 지도원 김광현과 동 호텔방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 북조선은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이 평양시가지는 물론 농촌도 협동농장이 되어 기계로 농사짓는 등 도시와 농촌이 모두 발전하여 누구나 다같이 살기좋은 곳이다.

- 내가 백번 천번 말해도 직접가서 조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오는 것이 좋다. 심사장은 돈도 많이 있으니 구경도 할겸 공화국에 가서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오시요, 그리고 조국통일사업을 위하여 같이 협력합시다.는 교양과 입북지령에 “갔다 오겠다”고 응낙한 다음 1972.3.일자 불상경 입북한 준비를 하고 요코하마지부 조총련 상공인 정상식 62세 가량, 가나가와깨 후지사와시(富士澤市)거주, 식당업, 정학천 68세 가량, 가나가와깨 후지사와시(富士澤市)거주, 직업미상 등과 같이 열차편으로 니이가다항(新鷺港) 도착하여 동 항고 의항에 정박 중인 북괴 만경봉호에 승선 각 지역에서 입북하는 조방단원(組訪團員) 약 30명과 합류 출발하여 청진항에 도착, 입북후 버스편으로 평양에 도착하여 일화 50만엔을 북괴에 자진 제공하고,

- 평양시가지

- 김일성 생가

- 천리마동상

- 인민 대광장

- 지명미상 협동농장

- 지명미상 비료공장

- 지명미상 축산단지

- 금강산

등을 관람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13일간 북괴를 다녀오고,

○ 1972.4.하순 일자불상 19:00경 조총련 니시 요코하마지부 사무실에서 지도원 김광현을 만나 동 지부 부근에 있는 “센스시야” 초밥집에서 주식을 제공받으면서 입북하였다가 돌아온 사실을

보고하고, 동인으로부터 “북조선에 가서 공화국의 발전상을 잘 보았는가 앞으로 한국에 갈 예정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들던 것과 같이 많이 발전되었다. 금년 가을경 한국에 갈 예정이다”라고 보고하고 동인으로부터

- 한국에 가서 입북관계는 비밀로 하고 친척과 가까운 친지들에게 북조선의 발전상을 선전하라.
-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실정을 잘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 1. 1972.9.19. 10:30경 도오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한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2:30경 김포공항에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 2. 1972.9.19. 14:00경 김포공항에서 본적지로 가고자 택시편으로 서울역에 가던 도중, 서울역전부근에서 철주를 박고 도로를 파헤쳐 각종 차량의 소통이 잘되지 않아 교통이 혼잡하다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차량운전사 성명불상에게 “무슨 공사를 하자는 것이냐”고 물어 “서울에는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대답을 들어서울의 지하철 공사현황을 파악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 3. 1972.10.6. 14:00경 김포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6:00경 도오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고,

○ 1972.10.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센스시야” 초밥집에서 지도원 김광현을 만나 동인에게 “한국에 다녀왔는데 서울시내는 지하철공사를 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상당히 발전된 것 같은데 농촌생활은 여전히 빈곤하고 도시민은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아주 못산다”고 탐지 수집한 내용을 보고하고,

○ 1973.3.초순경 본적지 거주 망매 심경순(84.3.15. 사망)으로부터 “경찰에서 오빠관계로 계속 조사를 나오고 있으니 한국에 오지말라”는 내용의 서신을 접수하고 동년 3.중순경 지도원 김광현을 만나 서신접수내용을 보고하자, “한국 입국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후부터 피검을 우려하여 입국을 중단하고,

○ 1973.4.부터 1975.3.경까지 2~3개월에 1회 가량 동 지부부근 “센스시야”, “요시노야” 초밥집 등지에서 동인으로부터 주식을 대접받으면서

- 북조선은 공업이 더욱 발전되었는데 남조선은 북조선에 비해 발전치 못하고 있다.
- 조총련에 대한 협력에 변심하지 말라는 등의 교양과 지령을 받는 등 계속 지도원 김광현과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 1977.8. 초순경 조총련 니시요코하마 지부 부근 “센스시야” 초밥집에서 지도원 김광현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나도 공화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나와 같이 한번 더 입북하여 공화국의 발전상을 보고 오자”는 제의에 “단기간이면 갔다 오겠다”고 응락하고,

○ 1977.9. 일자불상경 입북할 준비를 하고 지도원 김광현, 김용호(67세 가량, 가나가와께 후지사와시 거주, 약국경영) 등과 같이 나이가다향에 도착하여 북괴 만경봉호에 승선 각 지역에서 입북하는 조방단원 약 20명과 합류하여 청진항에 도착, 입북후 청진호텔에서 1박하면서 일화 50만엔을 북괴에 자진 제공하고 버스편으로,

- 백두산 부근 김일성 항일투쟁 전적지
- 압록강 근처 항일 빨치산투쟁 전적지
- 지명미상 협동농장, 축산단지
- 평양 만경대, 김일성 생가
- 금강산

등을 관람하는 등 반국단체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9일간 북괴를 다녀오고,

○ 그후 1977.10.부터 1980.12.경까지 매년 2.에 아다미온천 오노야호텔에서 개최된 조총련 가나가와께본부 니시요코하마지부 등 상공인 신년회 모임에 참석하여 북괴 선전영화인 명불상 방직공장, 홍남비료공장, 협동농장, 평양시가지 발전상 등의 장면이 나오는 북괴 선전영화를 관람하는 한편 지도원 김광현을 동 호텔 커피숍에서 개별 접촉하는 것을 비롯하여 약 6개월에 1회 가량 사전 전화연락하여 요코하마시 칸츄리 구락부, 조총련계 인물의 자녀 결혼식장 등지에서 동 김광현

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조총련에 물심양면으로 협력관계를 계속하고 연락을 유지하라”는 교양과 지령을 받는 등 계속 지도원 김광현과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4. 1981.2.초 일자불상 아다미온천 오노야호텔에서 개최된 요코하마지역 조총련 상공인 신년회 모임에 참석하여 지도원 김광현을 비롯한 조총련 간부, 상공인 등 25명 가량과 1박하면서 광주사태 및 휴전선 땅굴을 남한에서 팠다는 북괴 선전영화를 관람하고 지도원 김광현을 동 호텔 객실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동인에게 “이번 4월에 성묘단으로 처자와 함께 한국에 갈 예정이다”라고 보고하고 동 김광현으로부터

- 성묘단으로 입국하면 피검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신변에 각별한 조심을 하라.
- 남조선에 가봐야 좋은 것만 보여주고 나쁜 것은 제대로 보지도 못할 것이다.
- 10년만에 가니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제반실정과 서울 발전사항, 농촌의 실태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보고하라.

- 북조선의 조총련의 우월성을 친척과 가까운 친지들에게 선전하라.
는 등의 지령을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5. 1981.4.1. 15:00경 피검을 모면할 목적으로 처 조호강과 장남 심승을 대동 조총련 성모단원 일행과 같이 도오쿄 나리다(成田)공항에서 대한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7:00경 김포공항에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6. 1981.4.1. 입국후 성묘단 일행과 같이 워커힐에서 1박하면서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위문공연을 관람하고 다음날 버스편으로 국립묘지 참배, 국립박물관을 견학후 충남 천원군 소재 “망향의 동산”에 가서 분향하고 대구에서 1박후 부산에서 해산하여 각자 행동한다는 성묘단 환영행사 및 체류일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본적지에 들려 농천실정은 새마을사업을 하여 전기가 들어오고 길도 넓어지고 초가집이 기와집 등으로 바꾸어졌지만 사는 형편은 10년전과 별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재일조총련교포성묘단 환영행사 및 입국 체류일정과 농촌실태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7. 입국후 자신의 신변에 대하여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당하지 않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81.4.9. 10:00경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기편으로 출발 동일 12:00경 도오쿄 나리다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고,

8. 1981.5.초순 일자불상 10:00경 사전 약속하여 요코하마시 나가구 야마시다 오도리(中區山下大通)재판소 옆 상호미상 결혼식장 지하다방에서 지도원 김광현을 만나 동인에게 위 탐지, 수집한 내용으로서 “지난 4월 조총련 모국방문 성묘단으로 처자와 같이 입국하여 성묘단 전원이 워커힐 호텔에서 1박하고 다음날 국립묘지 참배후 서울시내 박물관을 견학한 후 충남 천원군에 있는 “망향의 동산”에 가서 분향하고 대구까지 갔다가 성묘단 일행과 떨어져 고향을 방문해 보니 농촌에 전기가 들어오고 길도 넓어지고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꾸어졌지만 사는 형편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다”고 탐지 수집한 내용을 보고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1981.5.24.부터 1982.6.17.까지 9회에 걸쳐 일본인 노구찌(野口, 55세 가량), 아사구라(朝倉, 56세 가량) 등과 같이 골프를 구실로 출입국 하면서 신변에 이상 유무를 살피었으나 수사기관에서 하등의 조사도 받지 않아 신상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9. 1982.6.하순 12:00경 조총련 니시요코하마지부 사무실에서 지도원 김광현을 만나 동 지부 부근 초밥집에서 점심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동인에게

- 그동안 여러차례 일본인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서울을 다녀왔는데 신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 서울에 조그마한 집을 매입했다.
는 등의 내용을 보고하고 동인으로부터

- 앞으로 계속 한국에 가서 종전과 같이 북조선과 조총련의 우월성을 선전하라.

- 서울을 비롯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제반실정을 파악하여 보고하라. 는 등
의 지령을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10. 1982.7.22. 10:00경 도오쿄 나리다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2:00경
김포공항에서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11. 1982.8.초순 일자미상 12:00경 대전시 동구 정동 소재 형제복덕방 사무실에서 동 업소주인 정
태희의 소개로 대전시 동구 삼성동 290의 19 소재 가옥을 매입시 동인으로부터 “대전이 발전 전
망이 밝다”는 말을 듣고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무슨 전망이 밝으냐?”고 질문하여 동인
으로부터 “대전은 중부권으로 과학기술연구단지가 있고 추가로 많은 연구소가 들어서게 되므로
발전될 전망이 밝은 곳이다”는 등의 말을 들으므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
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대전연구단지의 확장설치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
하고,

12. 1982.8.11. 13:00경 김포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5:00경 도오쿄 나
리다공항에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고,

13. 1983.4.말 일자불상 12:00경 사전에 전화(272-1336)연락하여 가나가와쿄 후지사와시 소재 상
호미상 예식장 지하다방에서 지도원 김광현을 만나 차를 마시면서 동인에게 “한국에 다녀왔는데
서울에 있던 연구단지가 대전으로 이전해 되어 발전전망이 밝다고 하여 대전시내에 집을 매입했
다. 서울은 발전했으며 88올림픽준비에 한창이다”라고 탐지 수집한 내용을 보고하자 동인으로부
터,

- 일본에서도 과거 올림픽 할 때 많은 빚이 생겨 경제가 어려운 경험이 있는데 한국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한국에 가서 북조선 및 조총련의 우월성을 선전하라.
는 등의 지령을 받으므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하고,

14. 1983.6.13. 10:00경 도오쿄 나리다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2:00경
김포공항에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
하고,

15. 1983.6.중순 일자불상 10:00경 대전시내 유성골프장에 골프치러 갔다가 동 골프장 케디 오영
회에게 지령사항을 실천할 목적으로 “월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여 “월 평균 20만원
된다”는 대답을 듣고, 동녀에게 “나는 재일교포인데 한국에 와보니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너같
이 못사는 사람은 뼈빠지게 일해도 못살며 시골사람들은 보리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한국 사회생활 실정을 비방하고, 동 오영회에게 “일요일에 이곳 골프장 출입자는 어떤 사람들이
냐”고 질문하여 “국회의원, 군고위장교, 기관장들이다”는 말을 들으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
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유성골프장출입 인사들의 신분에 관한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16. 1983.6.25. 12:30경 김포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4:30경 도오쿄 나
리다공항에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고,

17. 1984.7.6. 입국하여 대전에 체류중 동년 7월중순 일자불상 08:00경 위 조교영 및 임시 내연의
처 권혜자와 같이 택시편으로 계룡산을 향하여 가다가 08:30경 대전시 중구 덕명동 앞을 통과시
대전 국립묘지 건설현장을 주의깊게 관찰하다가 지령사항을 실천할 목적으로 동승한 조교영에게
“저기 절같이 생긴 건물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여, 동인으로부터 “국립묘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대답을 듣고, “서울에 국립묘지가 있는데 이곳에도 국립묘지가 있느냐”고 질문하
여 “대전에도 국립묘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대답을 들으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대전 국립묘지건설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
첩하고,

18. 1984.9.중순 일자불상 20:00경 지도원 김광현에게 전화연락하여 2일후 10:00경 요코하마시 호
도가야구(保土ヶ谷區)소재 골프장에서 동인을 만나 골프를 한 후 동일 12:00경 동 골프장 식당에
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동인에게,

- 대전 근방에 유성골프장이 있는데 일요일에 국회의원, 군고위장교, 충남도내 기관장들이 출입
하고 있다.

- 서울에 국립묘지가 있는데 대전에도 국립묘지가 건설되고 있다.
- 처남되는 조교영에게 북조선 및 조총련에 관한 선전을 했다고 탐지 수집한 내용 및 임무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동인으로부터
- 앞으로 한국에 가서 계속해서 친척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북조선 및 조총련을 선전하고
한국을 비방하라.
-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실정을 파악 보고하라.
는 등의 지령을 받으므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하고,

19. 1984.9.28. 10:00경 노스웨스트 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2:00경 김포공항에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20. 1984.9.하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지 동구 삼성동 290의 19 소재 피고인 자택 1층 내실에서
위 조교영과 대화중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전지방의 발전전망이 어떠냐”고 물어 동인
으로부터 “얼마전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대덕단지에 3,000억원을 투자하여 87년까지 기술도시로
건설한다고 하는데 대전은 장래가 유망한 곳이다”라는 말을 들으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
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대전 대덕기술단지 건설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21. 1984.10. 초순 일자불상 09:00경 위 조교영, 임영숙과 같이 내장산 관광차 버스편으로 서대전
에서 정읍까지 가는 도중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승한 조교영에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여 동인으로부터 “
이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로서 2차선으로 되어있던 것을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
적수행을 위하여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22. 1984.10.15. 12:30경 김포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4:30경 도쿄 나

리다공항에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고,

23. 1985.3.22. 입국하여 대전시 동구 삼성동 290의 19 자가에서 체류하면서 동년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동 가옥 1층 내실에서 위 조교영과 대화 중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전의 부동산 시세와 발전 전망이 어떠냐?”고 물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경기는 침체되었으나 얼마전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 대전에 10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이 건설되고 서울의 관공서가 대전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대전이야말로 크게 발전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대전행정타운 건설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24. 1985.6.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지도원 김광현에게 전화연락하여 2일후 09:00경 요꼬하마시 호도가야구(保土ヶ谷區) 소재 골프장에서 동 김광현을 만나 같이 골프를 하고 동일 12:00경 동 골프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동인에게

- 얼마전 한국에 다녀왔는데 서울에 있는 관공서가 대전으로 옮겨오게 되고 기술연구단지가 확장 건설되는 등 대전이 매우 발전성이 많다고 하더라.
- 는 등 탐지 수집한 내용을 보고하고 동인으로부터
- 한국에 가서 전과 같이 북조선의 발전상을 친척, 친지에게 선전하라.
-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실정을 파악하여 보고하라.
- 는 등의 지령을 받으므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25. 1985.7.26. 10:00경 도오쿄 나리다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2:00경 김포공항에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26. 1985.8.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시 동구 삼성동 290의 19 소재 자택 2층 내실에서 위 조교영, 이영숙 등에게 지령사항을 실천할 목적으로,
- 남조선에서는 사진촬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등 통제가 심하다.
- 일본에서는 수상이 정치를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도 무방한데 남조선에서는 이런 말을 못한다.
- 남조선 여자들이 일본에 오면 술집에서 몸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한다.
라고 말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27. 1985.8.10. 12:30경 김포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기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4:30경 도오쿄 나리다공항에 도착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고,

28. 1985.10.31. 20:00경 위 자택 2층 내실에서 위 조교영에게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 올림픽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부담만 주어 좋지 않다. 일본도 올림픽을 개최후 2년간 후유증이 있었다.
- 올림픽게임 관람권을 미국이나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강매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 전파하고,

29. 1985.11.2. 21:00경 수원관광호텔에서 이영순에게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 전두환 정권은 오래 못간다. 군인이 정치를 하면 오래 갈수 없다.

- 올림픽에 소련과 중공이 참가한다고 발표하였지만 그때 가봐야 안다. 북조선이 거부하면 참가 할 수 없다. 고 말하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사회질서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고,

30. 1986.3.7. 입국하여 동일 20:00경 대전시 동구 삼성동 290의 19 소재 피고인 자택 2층 내실에서 위 조교영에게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김대중과 김영삼 등을 자택에서 연금시켰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하여 동인으로부터 “현재는 연금상태가 아니고 대화정치로 곧 국회가 개원될 것이다”라는 대답을 들으므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한국의 정치동향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것이다.

재판장 판사 김현무

판사 이석우

판사 김영식

-
- 1 B9501084 국가보안법위반
 - 2 B9303057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등
 - 3 B9302052 독직폭행등
 - 4 B9301053 국가보안법위반
 - 5 B9203029 손해배상(기)
 - 6 B9202059 국가보안법위반
 - 7 B9202058 국가보안법위반등
 - 8 B9202022 손해배상(기)
 - 9 B9201073 면직처분무효확인
 - 10 B9103050 국가보안법위반
 - 11 B9103022 위자료
 - 12 B8902056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 13 B8703061 국가보안법위반등
 - 14 B8703058 국가보안법위반등
 - 15 B8701061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
 - 16 B86010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 17 B8503050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
 - 18 B8404115 보호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